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항공기사고피해자및유가족지원법안 검 토 보 고

< 항공기사고 초기대응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

■ 조은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544호)

2025.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임 종 수

목 차

□ 조은회의원 대표발의(2208544)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1
Ⅲ. 주요내용	2
Ⅳ. 검토의견	3
1. 제정안의 제안배경 및 구성 체계	3
2. 총괄 검토의견	5
3. 국토교통부 의견	8
4. 조문별 검토	9
가. 총칙(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9
나. 초기대응 등(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14
다. 피해자 지원 등(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16
라. 피해자 지원 등(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21
마. 보칙·벌칙 및 부칙(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부칙)	27

□ 조은회의원 대표발의(2208544)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조은회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2. 27.
3. 회 부 일 : 2025. 3. 5.

II. 제안이유

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항공기사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의 불비로 인하여 사고 당시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각종 준비와 지원대책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유가족들이 사고에 관한 정보공유를 요청한 뒤에야 수습현황이 공항 전광판을 통해 전달되었으며, 야외 격납고에 설치한 임시 안치소에서 희생자 주검이 부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서야 시신 안치를 위한 냉동 컨테이너가 투입되는 등 미흡한 초기대처도 문제되었음. 또한 유가족에 대한 희생자 정보공유가 지연되며 불투명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기도 하였음.

더욱이 우리나라는 1952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가입하여,

2024년 ICAO 표준에 맞춘 ‘항공기사고 지원업무 표준 교안’이 마련되었으나, 이번 제주항공 사고 당시에는 국토교통부가 2005년에 수립한 ‘항공기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중심으로 대응이 이루어진 실정임.

이에 항공기사고가 발생할 경우, 초기대응 및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항공기사고 희생자, 유가족, 생존자에 대한 지원업무를 국제기준에 맞도록 체계화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가. 신속한 초기대응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 조사 및 유가족 소통 등을 위하여 항공기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구성하고 현장책임자를 임명함(안 제5조).

나. 항공기사고 피해자 지원단은 피해자들의 추모 및 대기를 위한 공간 및 유해안치를 위한 설비 등 시설을 마련하고 피해자에 대한 연락책 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위해 정보 제출 요청, 인원 및 물자 제공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지원금 지급, 심리상담 지원, 근로자 치유휴직 및 법률지원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3장).

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생활 지원금등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을 규정함(안 제5장).

IV. 검토의견

1. 제정안의 제안배경 및 구성 체계

지난 2024년 12월 29일 방콕발 제주항공 2216편은 무안공항에 착륙기
어 장치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로 동체 착륙하였고, 활주 중 활주로를 초
과하였으며, 방위각(Localizer) 시설물과 충돌하여 화재가 발생하였음.
이로 인해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사망하고 항공기가 전소하는 등 사
고(이하 “12·29여객기참사”라 함)가 발생하였음.

관련하여 항공기사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의 불비로
인하여 12·29여객기참사 당시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각종 준비와
지원대책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특히, 지난 제22대국회 제420(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대응
초기에 유가족이 있는 현장에 대한 정보공유가 미흡했다는 지적, 현장
민원담당 공무원이 부재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¹⁾, 그 밖에 참사 희생
자의 유해가 방치되는²⁾ 등 항공기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 및 피해자 지원이
체계적이지 못한 문제가 지적된 바 있음

이에 본 제정안은 항공기사고에 대하여 체계적인 초기 대응 및 피해자

1) 제22대국회 제420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록, 2025.1.14. p.83-84

2) 매일일보, 유족들 “격납고서 유해 부패…바닥에 널브러져”, 2024.12.30.

<https://www.imaeil.com/page/view/2024123021182108328>

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것임.

제정안의 구성체계를 살펴보면 “항공기사고피해자및유가족지원법”의 제명으로 본칙 5개의 장 22개 조문과 부칙 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구 분	조 문	규 정 사 항
본 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등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초기대응 등	
	제5조	항공기사고 피해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제6조	항공기사고 피해자 지원단의 업무
	제7조	항공기사고 피해자 지원단의 책무
	제8조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원
	제9조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제3장 피해자 지원 등	
	제10조	지원의 원칙
	제11조	피해자 등의 참여 보장
	제12조	생활지원금등
	제13조	심리상담 등의 지원
	제14조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
	제15조	근로자의 치유�휴직
	제16조	근로자의 치유�휴직 지원
	제17조	「긴급복지지원법」 및 「아이돌봄 지원법」 등에 대한 특례
	제18조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제19조	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제4장 보칙	
	제20조	권리의 보호
	제21조	배상금 등의 환수
	제5장 벌칙	
	제22조	벌칙
부 칙	시행일	

2. 총괄 검토의견

현재 국토교통부는 항공기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항공기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항공기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등 매뉴얼에 따라 초기 대응을 하고 있으나, 지난 12·29여객기참사와 관련하여 초기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또한, 항공기사고 피해자 지원에 관한 일반적 법령이 미비하여 특별법의 형태로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위한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4월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음.

반면, 미국의 경우 항공기사고 피해자와 그들의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49 USC §1136’과 ‘49 USC § 41113’으로 구성되는 ‘항공재난 가족 지원법(Aviation Disaster Family Assistance Act of 1996)’을 제정하여 항공기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가족들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사고가 발생한 항공사가 피해자 가족을 지원하도록 책임을 부과하고 있음.³⁾

3) 전종진·김휘양·유광의, 항공사고 피해자 가족지원 제도개선 연구,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3권 제2호(2018) p.323~326

【 항공기사고 관련 지원 제도(미국) 】

49 USC §1136 에 따른 미국 내에서 발생한 자국 또는 외국 항공사의 항공사고에 대해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 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 및 지정된 지원기관의 책임과 역할

1) NTSB

- 가) 피해자 가족과 연방정부 및 항공사 간의 연락업무를 수행할 직원의 지정과 이름, 연락처의 공지
- 나) 사고 피해자 가족의 정신적 치료와 지원을 담당할 독립된 비영리단체 지정
- 다) 사고 사망자와 부상자의 식별과 회복 촉진

2) 적십자(Red Cross) 등 지정된 지원기관

- 가) 사고 항공사 재난대응팀과 협력하여 피해자 가족에게 정신상담 서비스 제공
- 나) 피해자 가족만을 위한 비공개 추모공간 제공 및 가족과 추모식 준비 논의
- 다) 피해자 가족에 대한 연락과 지속적인 접촉
- 라) 사고와 사고 후 조치에서의 정부와 항공사의 역할에 대한 가족과의 소통

49 USC § 41113 에 따른 자국 항공사의 항공사고 피해자 가족 지원계획 포함 항목

- 1) 탑승객 가족이 이용 가능한 무료전화 설치와 전화번호 공지 및 관리 직원의 배치
- 2) 탑승객 명단을 가족에게 통보하는 절차
- 3) 탑승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즉시 2)항의 절차에 따라 가족에게 통보
- 4) 지정된 가족지원기관에게 탑승객 명단 제공
- 5) 탑승객의 유해와 유품에 대해 가족과 협의하여 처리
- 6) 가족이 요청하는 경우 항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탑승객의 소유물을 사고조사 및 범죄수사에 필요로 하지 않는 한 가족에게 반환
- 7) 승객의 청구가 없으면 탑승객의 소유물은 최소 18개월간 항공사가 관리
- 8) 위령비 등의 설치에 대해 항공사는 가족과 협의
- 9) 무임탑승객과 사고로 인한 다른 피해자의 가족에 대해서도 운임탑승객 가족에 대한 지원과 동일한 지원 제공
- 10) 사고 후 가족이 적절한 수준의 서비스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된 가족지원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
- 11) 지정된 가족지원기관이 제공한 서비스 등에 대해 보상
- 12) 가족의 사고지점으로의 이동을 보장하고 그들이 사고지점에서 머무는 동안 물리적 지원 제공
- 13) 계획의 실행을 위해 충분한 자원 투입
- 14) 가족의 요청에 따라 탑승객의 이름이 사고 항공기의 예비승객명단에 포함되었는지 확인하여 정보 제공
- 15) 생존자와 가족들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직원 등에 대한 교육 제공
- 16) 미국 밖에서의 항공기 사고와 관련하여 항공사가 자발적으로 미국 시민권자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경우 항공사는 NTSB 및 국무부와 협조하여 지원을 제공
- 17) 인공구조물 또는 정부소유가 아닌 땅의 다른 재산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사고의 경우 가능한 신속하게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 18) NTSB가 사고현장으로부터 80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서 공청회 등의 절차를 수행하는 사고의 경우 해당 사고 항공편의 출발과 목적지가 미국 내에 있다면 항공사는 두 지역 모두에서 전자적 수단 등을 통해 동시에 NTSB의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

자료 : 전종진 · 김휘양 · 유광의, 항공사고 피해자 가족지원 제도개선 연구, 항공우주정책 · 법학회지 제33권 제2호(2018)

이에 제정안은 항공기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기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긍정적임.

다만, 현재로서는 선박, 철도 등의 다른 대형 교통수단 관련 사고에 대해서도 피해자 지원에 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대형 선박사고나 철도사고 등에서도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피해자와 그 가족 역시 항공기사고 피해자와 유사한 형태의 지원을 필요로 할 수 있음.

이러한 점에서 항공기사고에 대해서만 피해자 지원에 관한 일반법이 제정될 경우 다른 교통수단 사고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다양한 교통수단의 재난에 대하여 통합적인 관점에서 지원체계를 정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국토교통부 의견

사고 수습, 피해자 지원 등 항공기사고 대응체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항공사고 피해자 지원 매뉴얼」 개발 연구용역이 별도로 진행 중이고, 구체적 피해자 지원사항의 경우 개별 항공기사고 특징 및 해당 사고의 유가족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내용을 검토·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4. 조문별 검토

가. 총칙(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정안
항공기사고피해자및유가족지원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항공기사고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 및 사고 수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신속한 초기 대응 및 피해구제를 통하여 희생자를 추모하고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기사고”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공기사고를 말한다. 2. “희생자”란 사고항공기에 탑승하여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사고항공기에 탑승한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 나. 희생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다.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한다. 1.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발생한 항공기사고 2.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발생한 항공기사고로서 「국제민간항공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을 관할권으로 하는 항공기사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안전법」 제3조에 따른 군용항공기의 항공기사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항공기사고의 수습 및 지원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제민간항공조약」과 같은 조약의 부속서(附屬書)에서 채택된 표준과 방식에 따라 실시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항공기사고와 관련된 초기대응 및 피해구제와 관련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안 제1조는 목적 조항으로 이 법의 제정 목적을 항공기사고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 및 사고 수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신속한 초기대응 및 피해구제를 통하여 희생

자를 추모하고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은 항공기사고 피해자 지원단의 구성·운영, 피해자들의 대기 공간과 유해안치를 위한 설비 마련 등 항공기사고 피해자 지원단의 책무, 생활지원금 지급과 같은 각종 지원 등을 규율하고 있는데, 목적조항에서 이러한 제정안의 규율사항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요약하여 정리하고 있음.

안 제2조는 정의 조항으로 항공기사고, 희생자와 피해자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먼저, ① 항공기사고의 정의와 관련하여 제정안은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사고(「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4)를 인용하여 항공기사고를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제정안이 항공기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시 초기 대응 및 피해자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점을 고려할 때, 항공기사고의 정의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 전체가 아니라 인명피해가 수반되는 가목에

4) 「항공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항공기사고”란 사람이 비행을 목적으로 항공기에 탑승하였을 때부터 탑승한 모든 사람이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조종 등의 방법으로 비행하는 항공기(이하 “무인항공기”라 한다)의 경우에는 비행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순간부터 비행이 종료되어 발동기가 정지되는 순간까지를 말한다]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의 사망, 중상 또는 행방불명

나. 항공기의 파손 또는 구조적 손상

다.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한정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제정안의 목적이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여객기 사고를 전제로 그에 대해 대응하고 그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군용항공기의 경우 안 제3조에 따라 적용이 제외될 것이나, 항공기 사고의 정의를 제정안과 같이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경우 세관용, 경찰용, 소방용항공기 등 국가기관이 운용하는 항공기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제정안이 적용될 것이므로 그 적용범위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음, ② 희생자는 사고항공기에 탑승하여 사망한 사람으로 정의되고 있고, ③ 피해자는 사고항공기에 탑승한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가목), 사고항공기에 탑승한 사람(희생자 및 가목의 피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나·다목)로 정의되고 있음.

그러나 유사입법례인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은 세월호에 승선하여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도 희생자로 정의하고 있는 점과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은 참사 당시 사망한 사람에 더하여 참사에 따른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로 사망한 사람도 희생자로 정의하고 있음.

반면,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은

참사 당시 해당 여객기에 탑승한 사람 중 사망한 사람이라고 정의하여 제정안과 유사하게 정의하고 있으나, 이는 12·29여객기참사의 특성상 희생자가 명확하고 실종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데, 제정안은 모든 항공기사고에 적용될 것이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그리고 피해자의 경우에도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과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은 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을 피해자로 정의하고 있어 제정안 제2조제3호 외에 별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안 제3조는 제정법률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항공기사고의 수습 및 지원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제민간항공조약」과 같은 조약의 부속서(附屬書)에서 채택된 표준과 방식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대체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상 적용범위 조항⁵⁾을 참고한 것으로 보임.

5)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등) ①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철도사고등에 대한 사고조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발생한 항공·철도사고등
2.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발생한 항공사고등으로서 「국제민간항공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을 관할권으로 하는 항공사고등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등항공기에 대한 항공사고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련하여 앞서 항공기사고의 정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정안의 목적이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여객기 사고를 전제로 그에 대해 대응하고 그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안 제3조에 따르는 경우 세관용, 경찰용, 소방용항공기 등 국가기관이 운용하는 항공기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제정안이 적용될 것이므로 그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안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은 해당 법률과 다른 법률에 대하여 총체적인 관점에서 적용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법안은 항공기사고와 관련된 초기대응 및 피해구제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
1. 사람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경우
 2. 국가기관등항공기의 수리·개조가 불가능하게 파손된 경우
 3. 국가기관등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국가기관등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안전법」 제3조에 따른 항공기의 항공사고조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항공사고등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제민간항공조약」과 같은 조약의 부속서(附屬書)에서 채택된 표준과 방식에 따라 실시한다

나. 초기대응 등(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정안
제2장 초기대응 등 제5조(항공기사고 피해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사고로 인하여 사망자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초기대응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는 항공기사고 피해자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현장 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1. 승객 신원 및 현황 조사 및 보고 2. 유가족 소통 및 정보공유 3. 언론대응 및 브리핑 4. 그 밖에 항공기사고 초기대응 및 피해구제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항공기사고 피해자 지원단의 업무) ① 지원단은 초기대응 및 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할 수 있다. 1. 항공기의 운영자, 제작자, 항공사 직원 및 그 밖의 관계인(이하 “사고관계인”이라 한다)에 대한 탑승객 명단 등 항공기사고 관련 정보의 제출 요청 2. 사고관계인에 대한 인원 및 물자 제공을 통한 현장 대응 협력 요청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고관계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7조(항공기사고 피해자 지원단의 책무)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피해자들의 추모 및 대기를 위한 공간 및 유해안치를 위한 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 2. 피해자에 대한 연락책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사고 관련 정보를 공유할 것 3. 사고 대책 마련 및 브리핑 등의 회의에 피해자의 참석을 보장하는 등 피해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노력할 것 4.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것 제8조(국토교통부장관의 지원) ① 현장책임자는 초기대응 및 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관련 공무원의 파견, 물건의 지원 등 사고조사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고조사의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사고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현장책임자는 신속한 초기대응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의 공·사 단체의 장(이하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사고조사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항공기사고 발생 시 대응과 피해자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항공기사고 피해자 지원단의 구성, 업무 및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관련하여 안 제6조는 그 제목을 항공기사고 피해자 지원단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협조 요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안 제9조와 다소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외 업무의 내용은 필요 시 안 제5조 각 호의 역할에 추가하거나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안 제7조 항공기사고 피해자 지원단의 책무를 규정하면서 비밀 누설 금지도 함께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보칙에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 조문의 위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음, 안 제8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원을, 안 제9조는 관계 기관·단체 등의 협조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지원과 협조 사항을 “사고조사”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를 때 항공기사고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수행한다는 점, 안 제5조에 따를 때 항공기사고 피해자 지원단의 역할은 항공기사고에 대한 초기대응 및 피해자 지원이라는 점에서 “초기대응 및 피해자 지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다. 피해자 지원 등(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정안
제3장 피해자 지원 등 제10조(지원의 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른 피해구제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건강·복지·돌봄·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등은 외국인, 장애인, 아동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조(피해자 등의 참여 보장) 국가등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생활지원금 등) ① 국가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이하 “생활지원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생활지원금: 피해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 2. 의료지원금: 피해자의 항공기사고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 ② 생활지원금등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지급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① 국가등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 ① 국가는 피해자가 항공기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하여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10조는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지원의 원칙을 규정하고, 안 제11조는 지원 계획 수립·시행 시 피해자 등의 의견 청취 등 참여를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⁶⁾ 등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임.

한편, 안 제12조는 각종 지원금 지급에 관하여, 제13조 및 제14조는 심리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이 또한 대체로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⁷⁾ 등과 유사하나, 지원금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

6)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7조(지원의 원칙) ① 국가등은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피해자가 필요한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건강·복지·돌봄·고용 등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등은 외국인, 장애인, 아동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피해자 등의 참여 보장) 국가등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지원의 원칙) ① 국가등은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에 필요한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건강·복지·돌봄·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등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책을 수립한 경우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지원 소위원회의 점검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1조(피해자 등의 참여 보장) 국가등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54조(지원의 원칙) ① 국가등은 이 법에 따른 피해구제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건강·복지·돌봄·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등은 외국인, 장애인, 아동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5조(피해자 등의 참여 보장) 국가등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7)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보장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한 특별지원금 지급 규정 여부, 심리 지원의 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음.

지원금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대한 특례가 규정되지 않는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 시 해당 지원금이 포함되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는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인해 인적피해를 입은 국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자율적으로 조례에 근거하여 시민안전보험에 가입⁸⁾하고 있는데, 「상법」 제732조⁹⁾에 따라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제10조(생활지원금 등) ① 국가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이하 “생활지원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생활지원금: 피해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
2. 의료지원금: 피해자의 12·29여객기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
- ② 생활지원금등에 대하여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25조에 따른 지원·추모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생활지원금등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지급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15세 미만 희생자 특별지원금) ① 국가는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하여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지원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그 주민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에 따른 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수준을 고려하여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특별지원금의 지급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심리상담 등 지원) ① 국가등은 피해자(희생자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포함한다. 이하 제13조에서 같다)와 구조·복구·치료·수습·조사·자원봉사 및 취재 등에 참여한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 지원) ① 국가등은 피해자가 12·29여객기참사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하여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가 되어, 15세 미만인 희생자에 대해서는 시민안전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음에 따라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은 특별지원금을 별도로 규정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상법」 개정안¹⁰⁾이 다수 발의되어 있어 그 경과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은 피해자의 범위에 희생자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포함하여 심리 지원을 하도록 하고, 특히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에 관련해서는 구조·복구·치료·수습·조사·자원봉사 및 취재 등에 참여한 사람까지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항공기사고에 따른 트라우마 등 정신적 고통은 직접적 피해자뿐만 아

【 시민안전보험 개요 】

□ 보험개요

- (개념)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인해 인적피해를 입은 국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조례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가입한 보험
- (지원대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국민(등록 외국인 포함)으로 피보험자 또는 사망 시 법적상속인
 - ※ 주민등록 기준 지자체에서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광주전남·무안 모두 가입)

자료 : 국토교통부

9)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5조의 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3724호, 박상혁의원 대표발의, 2024.9.5. / 의안번호 제2206188호, 박준태의원 대표발의, 2024.12.3. / 의안번호 제2207482호, 강득구의원 대표발의, 2025.1.14. / 의안번호 제2207941호, 김은혜의원 대표발의, 2025.2.6.)

나라 사고와 관련하여 구조 등에 참여한 사람도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제정안도 이와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라. 피해자 지원 등(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정안
제15조(근로자의 치유�휴직) ① 사업주는 이 법에 따른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항공기사고 발생 후 1년 이내에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치유�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치유�휴직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치유�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치유�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치유�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근로자의 치유�휴직 지원) ①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치유�휴직을 허용한 경우 그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비용의 지급내용,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긴급복지지원법」 및 「아이돌봄 지원법」 등에 대한 특례)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피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본다. ②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관련된 활동으로 피해자 자녀에 대한 돌봄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③ 국가등은 항공기사고로 인하여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미성년인 피해자에 대하여는 성년에 이를 때까지의 보호 및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의 기준·기간·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① 국가는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국가등은 금융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안 제15조 및 제16조는 항공기사고 피해자에 대한 치유�휴직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문은 대체로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¹¹⁾ 등과 유사하나, 치유�휴직 신청기한 및 휴직기간의 예외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차이가 있음.

치유�휴직과 관련하여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은 트라우마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적정 수준의 치유�휴직 신청기간과 휴직기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음, 안 제17조는 항공기사고 피해자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간주하여 같은 법에 따른 긴급지원¹²⁾을 할 수 있도록

11)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근로자의 치유툐직) ① 사업주는 이 법에 따른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12·29여객기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치유툐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치유툐직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치유툐직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치유툐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치유툐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치유툐직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근로자의 치유툐직 지원) ①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치유툐직을 허용한 경우 그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비용의 지급내용,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참고로, 긴급지원에 따른 생계지원은 4인가구 기준 187만 2,700원이 지급될 것임.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긴급지원대상자)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이하 “긴급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제9조(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금전 또는 현물(現物) 등의 직접지원

가. 생계지원: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나. 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다. 주거지원: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하고, 피해자의 자녀에 대해서 아이돌봄서비스¹³⁾를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친권자가 사망한 미성년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성년에 이를 때까지 보호 및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지원하고자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관련하여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간주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음.

라.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入所)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마. 교육지원: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 지원

바. 그 밖의 지원: 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2.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사회복지기관·단체와의 연계 지원

나. 상담·정보제공, 그 밖의 지원

1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 횟수
금전· 현물 지원	① 위기 상황 주지원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비용	73만500원/월(1인 기준) 187만2,700원/월(4인 기준)	6회
		의료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300만원 이내	2회
		주거	국가·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39만8,900원/월 이내 (대도시 1인 기준) 66만2,500원/월 이내 (대도시 4인 기준)	12회
		복지 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55만2,000원/월 이내(1인 기준) 149만4,100원/월 이내(4인 기준)	6회
	② 부가 지원	교육	가구원 내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초 12만7,900원/분기 중 18만 원/분기 고 21만4,000원/분기	4회
		기타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연료비, 해산비 등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15만 원/월 - 해산비(70만 원)·장제비(80만 원) 전기요금(50만 원 이내) : 각 1회		
③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 으로 연계	제한 없음	

자료 : 국토교통부

또한,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제정안에 따르면 이러한 서비스가 우선 제공될 수 있을 것임.

그리고 안 제18조는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9조는 피해자가 금융채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금융부담을 완화

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이는 항공기사고로 인하여 법률상담 또는 소송 등이 필요할 수 있어 이를 지원하고, 피해자의 경제적 곤란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임.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¹⁴⁾도 긴급복지지원, 아이돌봄 지원, 법률지원, 금융부담 완화 요청 등을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음.

한편,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¹⁵⁾은

14)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긴급복지지원법」 및 「아이돌봄 지원법」에 대한 특례 등) ① 이 법에 따른 피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본다.

② 피해자는 피해 회복과 관련된 활동으로 그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③ 국가등은 12·29여객기참사로 인하여 친권자가 사망한 미성년 피해자에 대하여는 성년에 이를 때까지의 보호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 등의 기준·기간·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일상생활돌봄 지원) 국가등은 피해자의 회복과 일상생활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

2. 건강과 영양상태 개선을 위한 식사 지원 서비스

3. 그 밖에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제19조(법률상담 등 지원) ① 국가는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피해자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협조 요청) 국가등은 금융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5)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교육비 지원) 국가등은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금·수업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또는 「유아교육법」 제7조 각 호의 유치원을 이용하는 유아

2.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이 확정되었거나 재학 중인 학생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이 확정되었거나 재학 중인 학생

12·29여객기참사로 부양의무자가 사망한 사례가 발생하여 교육비 지원을 특별법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항공기사고 피해자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사항으로 규정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마. 보칙·벌칙 및 부칙(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부칙)

제정안
제4장 보칙 제20조(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라 발생한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21조(배상금 등의 환수) ① 국가등은 이 법에 따른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 생활지원금 등 금전적 지급, 그 밖의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은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지원받은 경우 2. 착오 등으로 지급 또는 지원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그 반환할 자가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제22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생활지원금등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안은 보칙으로 권리의 보호, 배상금 등의 환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제정안에 따른 지원금의 성격을 고려할 때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제정안은 배상금, 위로지원금, 보상금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피해자 지원단의 자격을 사칭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피해자 지원을 명목으로 한 영리활동을 금지하는 규정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안 제22조는 유일한 벌칙 조문으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등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다른 입법례¹⁶⁾를 참고할 때 미수범 처벌 조항의 규정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80

16)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5장 벌칙

- 제38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에 따른 생활지원금등 및 제11조에 따른 특별지원금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를 위반하여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사람
 2.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원·추모위원회등의 위원·단원 또는 자문단의 자문위원 자격을 사칭하여 지원·추모위원회등 또는 자문단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
 3.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한 사람
- 제39조(미수범) 제38조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